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운영 정상화 계기 마련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하였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원안 의결되었다.

\* 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2년도 이행상황 평가결과 심의, ②~④ 3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심의

□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물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위원회는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요 1부.  
2.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관한 사항 1부. 끝.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2341)
		담당자	전문위원	나귀영 (044-200-2361)
<공동>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 붙임 1

##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요

□ (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0조('19.7월 최초 구성)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기능)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2조)

-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이행상황 평가    ② 유역물관리계획 등과 국가계획과의 부합
- ③ 수계별 유역범위의 지정    ④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
- ⑤ 중앙부처·광역자치체가 당사자인 물분쟁    ⑥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⑦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타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사항

□ (구성)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포함 **41명**('23.8.4. 기준)

○ 위촉위원과 민간위원장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 관계부처 장관 등 14명\* 및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4명

\*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기상청장·산림청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위촉직)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물분야 전문가 21명(민간위원장 제외)

\* (위촉직 임기) 3년 및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1월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건번호 제2021-1호)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물관리기본법」 제2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안건을 마련하여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나,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여,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7월 20일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건번호 제2021-1호)에 대한 재검토를 7월 21일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설명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 1월 위원회가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상시개방이라는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본 사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 1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건번호 제2021-1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이상 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등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반영하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을 변경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마련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부 물관리 정책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